



#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세무회계경영저널

##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후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 이달의 특집

- 2025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 최고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국세청)

-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금융감독원)
- 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훈련강의저널  
+ CEO·CFO·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 각종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과세방법 ..... 2
- ✓ 과세소득으로 열거안된 비과세 이익들 ..... 3
- ✓ 개인사업자 필요경비산입과 불산입비용 비교 ..... 4

## 이달의 특집

- ✓ 2025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 5
-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국세청) ..... 91

## 6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0 (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0 (목)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회계정보

- ✓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금융감독원) ..... 131

## 경영정보

- ✓ 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 139

-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5월) ..... 144

#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 각종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과세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5/5/14일자 통권 1727호

대상		원천징수세율	최종 과세방법
강연·원고료, 일시제공 인적용역, 재산권무형자산		40%×20% = 8.8% (열거된 것만)	종합소득에 합산 (총수입의 40%)
복권당첨소득		소득금액의 20% (3억원 초과분 30%)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 종결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부득이한 사유*	3%, 4%, 5%	분리과세 연금소득임
	그 밖의 사유	15%	무조건 분리과세 종결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금품		-	무조건 종합과세합산
위 이외의 기타소득		소득금액의 20%	금액 조건부 종합과세임 •기타소득금액 > 300만원 초과시 → 종합과세에 합산함 •기타소득금액 ≤ 300만원 이하시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종교인소득		급여액× 20%-80%만 과세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 과세소득으로 열거안된 비과세 이익들

- 안세재경저널 2025/5/21일자 통권 1728호

구분항목	과세제외	과세되는 경우
국내상장주 양도차익	소액주주 과세예외	대주주 양도부분, 장외거래, 해외주식
채권매매차익	국공채, 회사채 매매익	채권보유기간의 이자는 이자소득합산과세
외환율차익	개인의 외환차익 등	국내화폐, 외국화폐 거래차익 등
서화·골동품 양도익	양도가액 점당 6천만원 생존 원작자의 작품 양도	6천만원 초과분, 원작자 아닌 유통작품들
보장성 보험차익	화재·손해보험 차익	사업용자산의 보험이익은 사업소득 합산
저축성 보험차익	보험기간 10년 이상 상품	보험기간 10년 미만, 중도해약익, 납입보험료 2억 초과
손해배상금	정신, 육체, 물질적 피해보상	계약의 위약, 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과세
사내급식 및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	월 20만원 초과액 등은 근로소득 합산
회사제공사택 등	출자자 아닌 임·직원 혜택	지배주주, 출자임원 제공금액은 근로소득합산

◎ 개인사업자 필요경비산입과 불산입비용 비교

- 안세재경저널 2025/5/28일자 통권 1729호

개념, 구분	필요경비인정범위	필요경비부인계산
총수입금액	판매장려금, 현금환급액 등은 수입액	사업무관 자산수증익은 제외(증여세 과세)
매입비용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입증액	사업무관구입, 가사비용, 개인경비 등
직원 급여 등	근로·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증빙	업무부적격 인건비, 비근무가족노동비 등
각종 비용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홍보비	소득세 비용, 매입 부가가치세, 임의부담금
업무용승용차	업무용 운행기록부 관련 주행 비용	사적사용부분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계상 반영	임의(과도)상각액 한도초과 상각
업무추진비	불특정다수 구매촉진지출 등	적격증빙 미수취액, 한도초과액 계산액
기부금 등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비지정기부금, 기부금 한도(소득×10% 등)초과
대손금액	회수불능액,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손충당금한도초과 등, 임의대손액
퇴직급여	종업원 퇴직금 추계액 반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지급이자	수입금액 대응부채의 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무관자산취득이자



이달의  
특 집

# 2025 개정세법 해설

- 국세청 -

##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 ✓ 주요 개정 내용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기준 마련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15호) : 2024.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49호) : 2025.2.28.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4호) : 2025.3.21. 공포

## 01.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 가. 개정취지

- 저출생 해소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신 설>  ○ (한도)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 (월20만원)는 현행 유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폐지 ○ ❶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❷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차례 **, ❸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사용자별로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만 비과세 해당 - (제외) 개인친족관계, 법인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포함)인 특수관계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수당부터 적용

## 02.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8조

### 가. 개정취지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li> <li>○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lt;할인유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li> <li>② 임원등에게 자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li> <li>③ 임원등에게 계열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li> <li>④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하고, 자사가 계열사에게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는 법인령 §89에 따르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li> <li>* (예) 파손·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탑승권 등</li> <li>○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 일 것</li> </ul> <p><input type="checkbox"/>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대상 금액*) Max(시가의 20%, 240만원)</li> <li>*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li> <li>○ (비과세대상 요건)</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li> <li>②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li> <li style="padding-left: 20px;">*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 등 2년, 그 외 재화 1년</li> <li>③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li> </ul>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03.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①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

####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의 범위</li> <li>○ 법인 배당·분배금 등 &lt;추 가&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 이익 포함, 각종 보수·수수료 공제</li> </ul> </li> <li>○ (좌 동)</li> <li>○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①+②)으로부터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일 것</li> <li>*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li> <li>* * 금전 신탁의 경우에만 수익증권 발행 가능</li> <li>- ② 신탁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제외)</li> </ul> </li> <li>○ 투자계약증권(①+②)으로부터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되어 모집(50인이상)하는 투자계약증권일 것</li> <li>- ② 공동사업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제외)</li> </ul> </li> </ul>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03.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②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춰 신탁세제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제외</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납부 의무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제외</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li> <li>○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li> <li>② 집합투자업경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li> <li>③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집합 투자기구로 한정)</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추 가〉</p>	<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적격집합투자기구</li> <li>④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li> </ul> </li> </ul>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인세) 2025.7.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적용

### 03.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③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세부사항 규정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 지급받은 날</li> <li>○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li> <li>○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지급받은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 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lt;신 설&gt;</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 지급받은 날</li> </ul>

### 03.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④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신설)

#####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세부사항 규정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계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증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증권 수 -각종 보수·수수료*</li> <li>*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li> <li>○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배*)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신탁 자산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또는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 사업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 제외</li> </ul> </li> <li>○ (환매 등*) A + B -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매·매도·해지·해산</li> <li>* * A : 분배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li> <li style="padding-left: 40px;">B : 증권당 환매 등 가액</li> <li style="padding-left: 40px;">C : 증권당 매수가액권당 배당소득금액</li> </ul> </li> </ul> </li> <li>□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증권당 매수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시장 거래) 이동평균법</li> <li>○ (증권시장 외) 선입선출법</li> </ul> </li> </ul>
--

### 03.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⑤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신설)

####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 관련 납세편의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li> <li>○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 자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가이익</li> <li>○ 신탁 또는 공동사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기간 중 손익 정산하지 않는 것을 약정한 경우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 처분이익</li> </ul> </li> </ul>

### 04.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법령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 대상 세금과 공과금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 벌금, 과료, 과태료 ○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 대상 부담금 추가 ○ (좌 동)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 (좌 동)

05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소득세법 부칙)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 (신고·납부) 연 1회 (다음연도 5.1.~5.31.) ○ (시행시기) 2025.1.1.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2027.1.1.

**06.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① 가상자산 취득가액 평가방법 등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8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 (계산단위) 가상자산 주소별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및 계산단위 변경 ○ (평가방법) 총평균법 ○ (계산단위) 거주자별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 ○ (평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 (계산단위) 가상자산 주소별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변경 ○ (평가방법) 이동평균법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6.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②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필요경비 의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5항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신 설〉	<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 (좌 동)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을 필요경비로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①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 ②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7.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 (나이요건) 2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나이요건 명확화 ○ (좌 동) ○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

**08.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1항, 제63조 제4항, 소득세법 제56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 (적용대상) ❶ 또는 ❷ ❶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❷ 신규 사업자(개인) ○ (공제금액)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7.12.31.

09.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 출산·양육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확대 ○ (좌 동) ○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0.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세법 제61조)

#### 가. 개정취지

-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추 가>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좌 동) ┌ │ - (좌 동)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1.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제1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교부금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납부) 납세조합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li> <li>*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li> <li>○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li> <li>*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li> <li>○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li> <li>*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등)</li> <li>○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1~10%)</li> <li>*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li> <li>○ 근로자 공제율 축소 : 소득세액의 5% → 3%</li> <li>*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근로자) 2027.12.31. -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li> </ul>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사업자 교부금 폐지·근로자 세액공제율 축소)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2025.2.28. 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

**1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정착 및 기부자 편의 증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li> <li>○ 종이영수증 및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li> <li>○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li> <li>○ (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

**13.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재외근무수당 75%, 재외가족수당·학자금 등 전액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input type="checkbox"/>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인력공단 <추 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14.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종교관련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유 〈추 가〉 ○ (한도) 월 20만원 이내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좌 등) - (좌 등) -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 (좌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저축성보험차익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가. 개정취지

- 역외세원관리 및 위법 보험계약에 대한 제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저축성 보험계약 <b>①</b>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손해보험계약 <b>②</b>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영위하는 생명·손해공제계약 <b>③</b> 우체국보험계약 〈추 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저축성 보험 ○ (대상) 한도 내 일시납·월적립식·종신형 연금 보험 〈신 설〉	<input type="checkbox"/> 보험계약 범위 합리화 ○ (좌 등) <b>④</b> ①~③과 유사한 생명·손해보험계약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범위 합리화 ○ (좌 등) - 역외 보험계약* 및 ④에 따른 보험 계약 제외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 회사와의 보험계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보상액 소득구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따른 소득구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 시 매도인이 지급받는 보상액*의 소득구분 * 매수인이 지급받은 이자 또는 배당과 동일한 금액(이자·배당상당액)을 매도인에게 지급 ○ 채권RP거래 보상액 : 이자소득 ○ 주식RP거래 보상액 : 배당소득

**17. 집합투자기구 이익 과세체계 정비**

**①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분배유보 범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적격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분배유보가능 범위 ❶ 결산시 펀드 이익금(과세손익+비과세손익) 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❷ 투자자산 매매·평가이익 ❸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거래이익 〈신 설〉	<input type="checkbox"/> 분배유보 범위 조정 ] ○ (좌 동) - 이자·배당은 제외 ❹ 국내주식형 ETF의 이자·배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

**17. 집합투자기구 이익 과세체계 정비**

**②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래 또는 평가손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li> <li>○ 상장증권 및 상장증권 대상 장내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다음의 상장증권은 제외</li> <li>① 채권등</li> <li>②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추 가)</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li> <li>④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9.10.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17. 집합투자기구 이익 과세체계 정비**

**③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상장 공모펀드 관련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 <input type="checkbox"/> 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 통해 매수하는 경우 : 선입선출법	<input type="checkbox"/> 계산방법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4.1. 이후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

18. 배당소득 과세체계 정비

①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input type="checkbox"/>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만, 토지의 재평가차액(1% 적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감액배당 범위 조정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8. 배당소득 과세체계 정비

②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합병시 의제배당(① - ②) <b>①</b>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b>②</b>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input type="checkbox"/> 합병대가 명확화 ○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좌 동)

18. 배당소득 과세체계 정비

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벤처기업주식의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가. 개정취지

-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① - ②) <b>①</b>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하는 금전·재산의 가액 <b>②</b> 그 주식의 취득가액 ○ (좌 동) <추 가>	<input type="checkbox"/>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 (좌 동)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 행사 당시 시가 ※ 행사당시 시가 정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기관에 제출

## 18. 배당소득 과세체계 정비

### ④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 가. 개정취지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추 가>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 (좌 동)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19.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①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②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 (좌 동)

하) 다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추 가>	◻ ◻ (좌 동) ㉔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①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② 기초연금수급자</td> </tr> <tr> <td>대상부동산</td> <td>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td> </tr> <tr> <td>납입한도</td> <td>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td> </tr> <tr> <td>납입기간</td> <td>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td> </tr> <tr> <td>사후관리</td> <td>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①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② 기초연금수급자	대상부동산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구 분	내 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①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② 기초연금수급자												
대상부동산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 ②·③ 합산 납입한도 : 생애누적 최대 1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1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 무형자산 범위 ○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대상 자산 범위 확대 ○ (좌 동)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 22.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 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아래의 노동조합*(A+B)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input type="checkbox"/>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p>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p> <p>*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추 가〉</p> <p>①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p> <p>② 규약 등에 따라 ①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p> <p>○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p>	<p>- 이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p> <p>○ (좌 동)</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23. 주무관청의 의무위반 공익단체 통지 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 사후관리 효율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공익단체 관련 주무관청 - 국세청 간 통지의무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청 → 국세청) 주무관청은 공익목적위반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li> <li>○ (국세청 → 주무관청) 국세청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통지</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위반·지정취소된 공익단체부터 적용

## 24.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2항)

###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 범위 <b>❶</b>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b>❷</b>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 <b>❸</b>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 장애인증명서 〈추 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범위 명확화 ○ (좌 동)  <b>❸</b>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 (좌 동)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 함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2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가. 개정취지

-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대출기관을 통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무주택자</li> <li>○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li> <li>○ (공제한도) 연 400만원</li> <li>○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4㎡) 이하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li> <li>○ (공제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지방보훈청</li> </ul> </li> <li>②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lt;추 가&gt;</li> <li>③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lt;추 가&gt;</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p>-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p> <p>③ (좌 동)</p> <p>-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한 분도 적용

**26.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p> <p>○ (공제한도) 600~2,000만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환기간 15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환기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정금리 O</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r> </table> <p>○ (거치기간) 없음</p> <p>○ (공제요건) 상환기간*동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차입금 상환</p> <p>- 매년 상환금액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width: fit-content;"> <math display="block">\frac{\text{차입금의 70\%}}{\text{상환기간 연수}}</math> </div> <p>*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p>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고정금리 O	10년 이상	2,000만원	600만원	<p><input type="checkbox"/>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p> <p>○ (좌 동)</p> <p>○ 1년 이내</p> <p>○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 기준 명확화</p> <p>- 매년 상환금액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width: fit-content;"> <math display="block">\frac{\text{차입금의 100분의 70}}{\text{상환기간 연수}} \times \frac{\text{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12}</math> </div>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고정금리 O	10년 이상						
2,000만원	600만원						

27.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추계조사로 소득금액 결정·경정시 상한 적용</p> <p>○ (기준소득금액*의 상한)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p> <p>* 기준경비율 적용한 추계소득금액</p> <p>**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p> <p>○ (적용기한) 2024.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2027.12.31.</p>

## 28.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

### ①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03조)

####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정산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정산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p> <p>○ 퇴직소득세액 = ① - ②</p> <p>①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p> <p style="margin-left: 20px;">* 기지급퇴직금 + 지급할 퇴직금</p> <p style="margin-left: 20px;">* * 전체 근속연수(중복기간 제외)로 연분연승법 등 적용</p> <p>② 기지급 퇴직금 산출세액*</p> <p style="margin-left: 20px;">* 이미 납부·이연된 세액을 공제</p>	<p><input type="checkbox"/>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p> <p>○ (좌 동)</p> <p>① (좌 동)</p> <p>② 재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 기납부세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재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p> <math display="block">= \frac{\text{전체 퇴직소득 산출세액}}{\text{정산 전 이연퇴직소득}} \times \frac{\text{정산 전 수령분 제외}}{\text{전체 퇴직소득}}</math> <p>※ 기납부세액(=①+②)</p> <p>①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p> <p>②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전액 연금외수령을 가정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함)</p> </div>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28.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

### ②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제6항·제7항)

####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정산 시 과세집행을 위한 절차 마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p> <p>○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lt;신 설&gt;</p>	<p>□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p> <p>○ (좌 동)</p> <p>- 단,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름</p> <p>①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p> <p>* 연금계좌취급자 직접 제출도 가능</p> <p>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p> <p>③ 이연퇴직소득세액 변경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p> <p>* 다수 계좌 보유시 각 계좌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p> <p>④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 반영</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29.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 제공의무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절차 개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가상자산 양도등 소득 지급시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li> <li>○ (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li> <li>○ (원천징수세액) ① 또는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Min[지급금액 10%, 소득금액 20%]</li> <li>②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급금액 10%</li> </ul> </li> <li>○ (원천징수의무자) 가상자산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 이행 전 ① 또는 ② 방법으로 납세자의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확인필요</li> <li>① 납세자로부터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li> <li>② 국세청으로부터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li>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확인방법 조정</li> <li>① (좌 동)</li> <li>② &lt;삭 제&gt;</li> </ul>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7항)

####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input type="checkbox"/>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 (좌 동)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상호 - (좌 동)

3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에 대한 자료집중기관 추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료집중기관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자료집중기관 추가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1. 장애인 공제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1. 장애인 공제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2. 연금계좌 납입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2. 연금계좌 납입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 협회 등
3. 의료비세액공제(장애인보장구, 안경,보청기 제외)	국세청장이 고시로 지정하는 기관	3. 의료비세액공제(안경, 보청기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장이 고시로 지정하는 기관
4. 교육비 세액공제	국세청장이 고시로 지정하는 기관	4. 교육비 세액공제	국세청장이 고시로 지정하는 기관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고용노동부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고용노동부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납입액	중소기업중앙회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납입액	중소기업중앙회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2.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법인세법 제120조의4)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집계표 ○ (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 (좌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세법) 20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20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32.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

#### ②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소득세법 제164조의4, 제177조, 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24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li> <li>○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최대 2,000만원 부과</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과태료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과태료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세법) 2028.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33.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 통지수단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 통지수단 확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으로 의제하는 금융회사	<input type="checkbox"/> 통지수단 확대

등의 통지방법 ① 금융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 등을 기재하여 통보 ② 금융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	① (좌 동) ② 금융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적 전송매체(컴퓨터, 휴대전화, 팩스 등)로 통보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3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가. 개정취지

- 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및 세원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총 138개 업종 ① (사업서비스업)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업 등 ②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한의원, 수의사업 등 ③ (숙박·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숙박시설운영업 등 ④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등 ⑤ (그 밖의 업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대상 확대 ※ 4개 업종 추가시 총 142개 업종 ○ (좌 동) ○ 4개 업종* 추가 * ①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 사진 처리업, ③ 낚시장 운영업, ④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p>⑥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①~⑥ 업종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p>	<p>○ (좌 동)</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5.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연 3.5%</p>	<p><input type="checkbox"/> 이자율 하향 ○ 연 3.5% → 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간주임대료) 2025.3.2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소득·부가치)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인칙)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2025.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li> <li>○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li> <li>○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li> <li>○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li> <li>○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li> <li>○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li> </ul>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5호) : 2024.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349호) : 2025.2.2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90호) : 2024.11.12.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80호) : 2024.9.10. 공포

##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세법 제2장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등)

### 가. 개정취지

-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일) 2025.1.1.	<input type="checkbox"/> 폐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0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소득세법 제97조의2)

### 가. 개정취지

- 조세회피 방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자산 추가 ○ (좌 동) ○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03.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8항)

### 가. 개정취지

- 과세기준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input type="checkbox"/> 안분계산 예외 신설 ○ (좌 동)

차이 나는 경우 (단서 신설)	] (좌 동)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4.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9조의4)

가. 개정취지

- 과세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 주택 양도일 (신 설)	<input type="checkbox"/> 예외규정 신설 ○ (좌 동) -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05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제156조의2 제9항)

### 가. 개정취지

-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혼인·동거보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보양 : 10년 ②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 5년	<input type="checkbox"/>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 ① (좌 동) ② 5년 → 10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06.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공급 지원

### 나. 개정내용

- ①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거주요건)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 (대상)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생애 1회로 제한)</li> <li style="padding-left: 20px;">※ 장기어린이집은 횡수 제한 없음</li> <li>○ (임대주택 범위)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준수 필요</li> </ul> </li> <li>- 장기임대주택(신규 등록은 10년형만 가능)</li> <li style="text-align: center;">〈추 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li> <li style="margin-left: 20px;">○ (좌 동)</li> <li>- 단기민간임대주택*</li> <li style="margin-left: 20px;">*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li> </ul>
---	---

②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li> <li>○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은 비과세</li> <li>○ 그 외의 경우 : 모든 양도차익 과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제도 합리화</li> <li style="margin-left: 20px;">○ (좌 동)</li> <li style="margin-left: 20px;">○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이후 양도차익분 비과세</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7.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전월세시장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 면제 ○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1년 6개월이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2년 이상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②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③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④ 2024.12.31.까지 체결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④ 2026.12.31.까지 체결

08.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적용되는 주주 1인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주주 1인등*이 최대주주인 경우 :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합산한 비율이 1% 이상인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주주 1인 및 그와의 특수관계자 * *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혼외자의 생부모) 및 경영지배관계(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에 있는 자 <신 설> ○ 그 외의 경우 : 소유주식 비율이 1% 이상인 주주 1인	<input type="checkbox"/> 대주주 범위 합리화 ○ (좌 동) - 법인은 주주1인에서 제외 ○ (좌 동)

### 09. 양도소득세 증가가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 가. 개정취지

-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증가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저가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등</li> <li>○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수 에서도 제외)</li> </ul> <p>① 2024.1.10.~2025.12.31. 중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면적 : 전용면적 60m<sup>2</sup> 이하</li> <li>2)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li> <li>3) 준공시점 : 2024.1.10.~2025.12.31.</li> <li>4) 주택유형 : 아파트는 제외</li> </ul> <p>② 2024.1.10.~2025.12.31. 중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면적 : 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li> <li>2) 취득가액 : 6억원 이하</li> <li>3) 주택 소재지 : 비수도권</li> </ul>	<p><input type="checkbox"/> 특례대상 소형 신축주택 취득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p>① 2025.12.31. → 2027.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 (좌 동) 3) 2025.12.31. → 2027.12.31. 4) 아파트 제외 →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포함</li> </ul> <p>② (좌 동)</p>

### 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증가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 가. 개정취지

-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li> <li>* 주택수에서도 제외</li> <li>○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5.10.부터 20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li> <li>○ 장기민간임대주택(2020.7.11. 이후 매입형은 아파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형 :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li> <li>- 매입형 :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한시배제 1년 연장 및 중과배제 주택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025.5.9.까지 → 2026.5.9.까지</li> <li>○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기준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억원 → 9억원 이하</li> </ul> </li> <li>- (좌 동)</li> <li>○ 단기민간임대주택*</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적용 요건</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건설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매입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등록</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등록 필요</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임대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소 6년</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시가격상한</td> <td style="text-align: center;">6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 : 4억원 비수도권 : 2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적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지 :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최소 공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임대료증가율</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5%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정대상지역 제외</td> </tr> </tbody> </table>	구 분	적용 요건		건설형	매입형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필요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상한	6억원	수도권 : 4억원 비수도권 : 2억원	면적 기준	대지 :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	-	최소 공급	2호	-	임대료증가율	5% 이하		소재지	-	조정대상지역 제외
구 분	적용 요건																										
	건설형	매입형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필요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상한	6억원	수도권 : 4억원 비수도권 : 2억원																									
면적 기준	대지 :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	-																									
최소 공급	2호	-																									
임대료증가율	5% 이하																										
소재지	-	조정대상지역 제외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장기민간임대주택) 2025.2.28.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 (단기민간임대주택) 2025.6.4.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 11.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가. 개정취지

-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양도세가 증과배제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부요건*</p> <p>* 면적(전용 85㎡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p> <p>① (양도자)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사</p> <p>②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p> <p>③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 미체결되어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p> <p>④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주택</p> <p>⑤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p>	<p><input type="checkbox"/> 적용 요건 완화</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9.1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 중간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록의무 면제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5호) : 2024.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349호) : 2025.2.28. 공포

## 01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가. 개정취지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li> </ul>
<input type="checkbox"/>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기간)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li> </ul>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p>는 날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기간 인정)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으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목적이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및 출장·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등으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li> </ul>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거주자 정의)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거주기간 계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18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11조)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및 원천징수세액 차감액** 계산시 차감율</p> <p>*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외국납부세액 × 공제율</p> <p>** 원천징수세액 차감액 = 외국납부세액 × 차감율</p> <p>① 외국원천징수세율이 확인되는 경우 : 실제 외국 원천징수세율(㉑)과 국내원천징수세율(㉒)간 차이 고려해 산출*</p> <p>* i) ㉑&gt;㉒ : (㉒/㉑) - ㉒</p> <p>ii) ㉑ ≤ ㉒ : 1 - 국내세율**</p> <p>* * i) 공제율 산출시 : 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p> <p>ii) 차감율 산출시 : 국내원천징수세율</p> <p>② 외국원천징수세율을 알 수 없는 경우* : 1 - 국내세율</p> <p>* 신설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등</p>	<p>□ 외국원천징수세율을 알 수 없는 경우 계산방법 개선</p> <p>○ (좌 동)</p> <p>○ 외국원천징수 세율을 14%로 간주하여 ①에 따라 산출</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분부터 적용

02.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② 펀드등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외원천징수세율 계산방법</p> <p>① 재간접 투자 외의 경우 :</p> $\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frac{\text{펀드의 직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text{해당 외납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금액}}$ <p>② 재간접 투자*의 경우 :</p> <p>*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평균 투자비율</li> </ul> <p>③ ①과 ②가 혼합된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각의 투자비율에 따른 ①과 ②의 가중평균</li> </ul>	<p><input type="checkbox"/> 계산방법 개선</p> <p>① 재간접 투자 여부와 무관히 외국납부세액별 국외원천징수세율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원천징수세율 = 현행 “재간접투자 외의 경우”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국외원천징수세율을 알 수 없는 경우 14%로 간주</li> </ul> </li> </ul> <p>② ①에 따라 계산된 세액별 국외원천징수세율을 외국납부세액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분부터 적용

**02.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③ ISA 계좌별 소득합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기준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가. 개정취지

- ISA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특례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ISA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납부세액) ISA 계좌 내 펀드별 외국납부세액을 합산</li> <li>○ (외국원천징수세율) 14% 적용</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분부터 적용

**02.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④ 증권매도시 소득금액 산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지급받은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li> </ul>	<input type="checkbox"/> 증권의 매도에 따라 지급받은 소득의 산출방법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 [①, ②]</li> <li>① (매도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li> </ul>

	②(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분부터 적용

03.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소득세법 119조의3, 법인세법 제93조의3)

가. 개정취지

-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li> <li>○ (투자방법) 직접투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통한 간접투자</li> <li>○ (국외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비과세 신청방법</li> <li>①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 하위 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 비과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별 거주자증명서 취합·제출</li> </ul> </li> <li>② (i)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ii)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모국외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li> </ul> </li> <li>○ (원천징수 특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시 소득지급자 원천징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등)</li> <li>○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①&amp;② 모두)를 통해 투자시 :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국외투자지구 : 면제</li> <li>- 사모국외투자지구 : 원천징수</li> <li>※ 어느 경우든 거주자·내국법인은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모·공모국외투자지구 모두 원천징수면제</li> <li>※ 거주자·내국법인은 현행과 같이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li> </ul>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3.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② 비과세 신청서 관련 자료 제출절차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

**가. 개정취지**

-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신청서 제출 절차</li> <li>○ QFI를 통하지 않은 투자시 제출절차 - 투자자 → 소득지급자 → 세무서장</li> <li>○ QFI를 통한 투자시 제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투자자 → QFI</li> <li>- (2단계) QFI → 세무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FI는 자신의 비과세신청서를 작성 후 소득지급자를 통해 세무서장에게 제출</li> <li>• 투자자가 제출한 비과세신청서는 QFI가 보관</li> </ul> </li> </ul> </li> <li>○ 제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지급자가 매월 세무서장에게 제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신청서 제출 절차 간소화</li> <li>○ (좌 동)</li> <li>○ 하위투자자의 비과세신청서 제출 절차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제출 폐지</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가 제출한 성명, 거주지국 등 관련 자료는 QFI가 보관</li> </ul> </li> </ul> </li> <li>○ 제출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li> </ul> </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03.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 ③ 거주자증명서 및 거래보유명세서 제출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 가. 개정취지

-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주자증명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소득지급자가 매월 세무서장에게 제출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증명서 제출 폐지 ○ 〈삭 제〉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래보유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소득지급자가 매월 세무서장에게 제출	<input type="checkbox"/> 거래보유명세서 제출 폐지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03.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 ④ QFI 준수사항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3)

#### 가. 개정취지

- QFI의 납세협력의무 완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QFI 승인시 준수사항 ○ 세무서장이 비과세 신청 관련 자료 제출요구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 조정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제출</li> <li>○ 승인조건 준수</li> <li>○ 거주자증명서, 거래보유명세서 등 비과세 신청 관련 자료 보관 및 비치</li> <li>○ 거래보유명세서자료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삭 제〉</li> </ul>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부터 적용

**03.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⑤ 경정청구 절차 신설**

(소득세법 제119조의3 제6항·제7항, 법인세법 제93조의3 제6항·제7항)

**가. 개정취지**

- 외국인투자자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직접 경정청구 불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p>	<p><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li> <li>- (청구자)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li> <li>-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li> <li>-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04. 중간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록의무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 제179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 제132조의3)

##### 가. 개정취지

- 국채 투자 활성화 및 국채 시장 안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 ❶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❷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input type="checkbox"/>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법인 축소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중 금융감독원장이 국제예탁 결제기구로 정하는 법인
<input type="checkbox"/>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 사항 ○ (자료 제출·보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관련 자료를 보관·비치 ○ (자료 제출 기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요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 사항 보완 ○ (좌 동) ○ (좌 동) -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경유하는 경우,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024.12.31.까지 이전에 적격금융회사등으로 승인 받은 법인 중 외국금융회사 등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05.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소득세법 제129조)

##### 가. 개정취지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의 원천징수(예납적)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의 3% - 다만,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 운동가 : 20%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 ○ (좌 동) - 외국인 직업운동가 : 20% *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과세 절차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가상자산 양도등 소득 지급시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 ○ (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 (원천징수세액) ① 또는 ② ①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Min[지급금액 10%, 소득금액 20%] ②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급금액 10% ○ (원천징수의무자) 가상자산사업자 - 원천징수 이행 전 ① 또는 ② 방법으로 납세자의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확인필요 ① 납세자로부터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 ② 국세청으로부터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 (좌 동) ○ (좌 동) - 확인방법 조정 ①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7.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소득세법 제1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가. 개정취지

- 국내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 * ①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input type="checkbox"/>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input type="checkbox"/>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의무화  ] ○ (좌 동)  <삭 제>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input type="checkbox"/> 제출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한 소득 등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input type="checkbox"/>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li> <li>○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li> <li>○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li> <li>○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li> <li>○ 단기민간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li> <li>○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li> <li>○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li> </ul>

###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3호) : 2024.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350호) : 2025.2.28.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2호) : 2025.3.21. 공포

### 01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가. 개정취지

-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에 대한 과세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유·무형자산 처분수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li> <li>- 고유목적사업 전입 후 발생한 처분수입 과세 제외*</li> </ul>	<input type="checkbox"/> 고유목적사업에 장기간 사용한 유·무형 자산 처분수입 과세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p>*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전입 시 시가 〈신 설〉</p>	<p>○ (좌 동)</p> <p>○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 -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처분수입 과세제외*</p> <p>* 비과세 처분수입 = ①×② ①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최초 전입시 시가 ② 직접 사용기간 ÷ 보유 기간</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유·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02.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① 수익의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수익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 매출에누리금액 등 제외 〈추 가〉</li> <li>○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li> <li>○ 채무 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부채감소액</li> <li>○ 그 밖의 수익으로서 해당법인(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li> </ul>	<p><input type="checkbox"/> 임직원 할인금액을 수익에 포함</p> <p>○ (좌 동)</p> <p>-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p> <p>○ (좌 동)</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판매·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 대상 세금과 공과금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 벌금, 과료, 과태료 ○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 (좌 동)  ○ 법령상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부담금

**04.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가. 개정취지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손금인정 범위 ○ (대상) - 「상법」 제340조의2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자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추 가> ○ (손금액)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이	<input type="checkbox"/> 손금인정 대상 확대 - (좌 동)  -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자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 상장회사가 자사 또는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 (좌 동)

### 05.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6조)

#### 가. 개정취지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추 가> <추 가>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확대 ○ (좌 동) ○ 철도시설관리권 * 내용연수(30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 06.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 ①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7.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공동경비 배분 기준 및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 기준 ○ ①~④ 중 선택, 미선택시 ③ 선택으로 간주 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②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③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④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공동경비 분담 적용 준비 범위 ○ 조직·사업 등의 공동 운영·영위에 따른 준비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공동경비 배분기준 합리화  ○ (좌 동)  ○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①~② 중 선택, 미선택시 ① 선택으로 간주 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②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input type="checkbox"/> 공동소유자산을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 ○ (좌 동) ○ 자산의 공동 운영에 따른 준비 * 공동소유 자산에 대한 구체적 공동경비 배분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08.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규정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대상 * 임직원별 연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 이자·배당소득 제외 <추 가>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 확대 ○ (좌 동) ○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09.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 (요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 (손금산입) 소득금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액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 ○ (좌 동) ○ 소득금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 10.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 제2호)

#### 가. 개정취지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와의 과세형평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배당가능이익 제외 대상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유가증권 평가손익 - 주식, 채권의 평가손익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손익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좌 동)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1. 자기주식 관련 적격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 제82조의2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7항)

#### 가. 개정취지

- 자기주식 관련 적격 구조조정 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적격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① (교부) 합병·분할·주식교환등 대가 중 80% 이상(단순분할은 전액)을 주식등으로 교부 ② (배정) 피합병·분할법인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던 주식등의 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③ (보유) 배정받은 주식을 합병·분할·주식교환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input type="checkbox"/> 자기주식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  ○ (좌 동) - 피합병·분할법인 또는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지분비율 산정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분할) 20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2.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9항, 제84조의2 제18항)

가. 개정취지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 의무 ○ 분할법인·출자법인 및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은 과세특례 신청시 자산양도차익 명세서 제출 ※ 적격구조조정을 통해 주식 또는 자산을 승계한 법인 포함	<input type="checkbox"/> 승계자산 처분시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 ○ (좌 동)

〈추 가〉	-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은 승계자산 처분시에도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제출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배당금액 소득공제 ○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 (공제방법)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미공제액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 - (이월공제대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명확화	<input type="checkbox"/>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 대상 ○ (좌 동) -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전기 미공제 이월분) 합계액

**1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4%</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p><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p> <p>*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4%</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5. 단기민간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공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형)</li> <li>○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형, 건설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추가세율 적용 제외 임대주택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단기민간임대주택*(건설형)</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 요건 (건설형만 적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임대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소 6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시가격 상한</td> <td style="text-align: center;">6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적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td> </tr> </tbody> </table>	구 분	적용 요건 (건설형만 적용)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상한	6억원	면적 기준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
구 분	적용 요건 (건설형만 적용)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상한	6억원								
면적 기준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								

최소 공급	2호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6.4.(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16.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공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 (지원내용)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 (비사업용 토지 : 10%) 적용 제외 ○ (좌 동) ○ (적용기한) 20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7.12.31.

1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제2항, 제76조의18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원칙) ❶, ❷ 중 선택 ❶ 직전 사업연도(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❷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 (좌 동) -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연결법인*은 ❷ 방식 적용 *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 기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제4항, 제120조의25 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기업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적용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제외 법인 기준 ○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19.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 제2항)

#### 가. 개정취지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규정 정비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①+② ①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②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추 가>	<input type="checkbox"/> 투상세 가산 명확화 ○ (산출세액) ①+②+③ ① (좌 동) ② (좌 동) ③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

### 20.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 제5항)

#### 가. 개정취지

- 연결납세 제도 실효성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결손금에 대한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경우 ○ 주주*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연결집단 내 주주인 연결법인은 제외 - (기한)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	<input type="checkbox"/> 정산 예외 요건 완화 ○ (좌 동) ○ 연결법인 외 주주 중 9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기한) 신고기한 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1.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법인세법 제76조의22

###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확대 ○ 이후 3년간 → 이후 5년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 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법인세법 제76조의22)

### 가. 개정취지

- 연결납세방식 과세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방법 ○ (적용기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여부 판별 ○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추 가>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기준 신설 ○ (좌 동) ○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2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발급방법 ○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input type="checkbox"/>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2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4항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3항 신설)

가. 개정취지

- 기부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

**2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여행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 사업자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운영 사업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추 가)	<input type="checkbox"/>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1호의 여행업 영위 사업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6.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법인세법 제120조의4,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대상)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추 가> ○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집계표 ○ (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좌 동)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 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세법) 20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20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26.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②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소득세법 제164조의4, 제177조, 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24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 ○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 ○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최대 2,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세법) 2028.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li> <li>○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인정 범위 확대 및 국·영문본 제출의무 신설</li> </ul>	

###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3호) : 2024.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350호) : 2025.2.28. 공포

### 01.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가. 개정취지

- 안정적 공급망 확보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금불산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모회사)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li> </ul> </li> <li>○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등</li> <li>-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 (단서 신설)</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제외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li> <li>• 다만, 특정외국법인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 및 국·영  
문본 제출의무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가. 개정취지

-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실질귀속자 증명서류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li> <li>○ 거주자증명서, 이사회·주주 현황, 사용료소득의 원천이 되는 권리(저작권 등) 관련 정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보고서 외 세무신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 서류도 인정</li> <li>○ (좌 동)</li> </ul> <p><input type="checkbox"/> 증명서류 국·영문본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본 제출 의무</li> <li>- 국세청장 인정 시 영문본만 제출 가능</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주요 개정 내용

-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외국법인 추가
-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합리화
-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

###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77호) : 2025.3.14.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49호) : 2025.2.28.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08호) : 2025.3.21. 공포

## 01.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가. 개정취지

- 기업 승계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 사업무관 자산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상속·승계 재산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사업용 토지 등</li> <li>○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     &lt;단서 신설&gt;</li>   <li>○ 대여금     &lt;단서 신설&gt;</li>   <li>○ 과다보유 현금 -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임직원* 사택**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 및 ② 최대주주의 친족등인 임직원은 제외</li> <li>** 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②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li> </ul> </li> <li>○ (좌 동)</li> <li>-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li> <li>**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li> </ul> </li> <li>○ 기준 조정 - 150% → 200%</li> </ul>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02.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범위</li> <li>○ 토지     &lt;단서 신설&gt;</li> <li>○ 건축물, 기계장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범위 조정</li> <li>○ (좌 동)</li> <li>- 비사업용 토지 제외</li> <li>○ (좌 동)</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03.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 가. 개정취지

- 백년가게 지속경영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광업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 업종 추가 ○ (좌 동) ○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 *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 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04.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

#### 가. 개정취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제한도) 6억원	<input type="checkbox"/> 요건 합리화

<p>- (요건) ①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②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 ③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것</p> <p>○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수 지분자로서 소유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좌 동)</p> <p>-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소유한 경우</p>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5.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 개정취지**

- 감자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고가로 소각</li> <li>○ (증여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li> <li>○ (과세 기준금액) ①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30%와 ②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li> </ul>	<p><input type="checkbox"/>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①1주당 감자한 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이가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30%이상이거나 ②감자이익이 3억원 이상</li> </u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 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내국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	<input type="checkbox"/>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 대상에 외국법인 추가 ○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 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내국·외국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08.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가. 개정취지

-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input type="checkbox"/> 친족 범위 합리화 [ ] ○ (좌 동)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3.14.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09.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가. 개정취지

- 비상장보험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순자산가액* 산정시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 산정방법</p> <p>* 순자산가액 = 자산 - 부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부채에서 차감</li> <li>○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채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li> <li>- 보험사업 영위 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외)의 경우 :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li> <li>-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 비상위험준비금</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하는 범위 합리화</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법」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 변동분 제외)</li> <li>- 해약환급금준비금(「법인세법」 제32조 제1항)</li> </ul>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3.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10.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담보신탁 재산 평가 특례 ○ ①, ② 중 큰 금액 ① 신탁계약(수익증권)의 수익한도 금액 ② 시가평가에 의한 시가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합리화 ○ (좌 동) ① 신탁계약(수익증권)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세원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변경 등과 관련된 지급 명세서 및 변경 내용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의무화 ○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 ○ 수탁재산 관련 내용 ○ 전환사채등의 발행 관련 사항 ○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주식등의 계좌간 이체내용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제출 대상 확대 ○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및 조합원 관련 사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3.14.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분야)

### 01.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조문 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가. 개정취지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기간 자율성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 (절차)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고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세무서장 보고 ○ (기간)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세무확인 실시	<input type="checkbox"/> 조문 정비 ○ (좌 등)  <div style="text-align: right;">〈삭 제〉</div>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3.21. 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세무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

### 0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6항)

####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지정감사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4년 감사인 자유선임 후 2년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감사인 선임 <input type="checkbox"/>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지정 면제 대상 합리화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 금융감독원 -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공익법인인 기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3.21.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

03.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자료 확인 근거 마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가. 개정취지

- 국세청의 증빙자료 확인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을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증빙자료 확인 요청 가능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input type="checkbox"/> (대상) ①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②감사인을 4년간 자유선임한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지정기준) ①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고, ②최근 5년 중 3년 이상 공익법인 회계 감사를 수행한 사람 중 지정점수* 고득점순                      * 감사업무 경력기간 및 감사실무 교육실적 바탕으로 산정                 </div>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3.2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04. 공익법인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결산공시 자료 신청 근거 마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6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 (제공대상)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기부금통합관리기관 <추 가>	<input type="checkbox"/> 자료 제공대상 확대 ○ (좌 동)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국세청 -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2023년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요약>

가.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법 §18의2)		
혜택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요건	피상속인	·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간 보유
	상속인	·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조특법 §30의6)		
혜택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요건	증여자	·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인	· 18세이상 거주자(자녀)

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상증법 §71)	
혜택	총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라.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증법 §72의2, 조특법 §30의7)	
혜택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요건	중소기업

## 1.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 <25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증 전	개 정
상증령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광업 등</li> </ul> </li> <li>&lt;추 가&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등)</li> <li>○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자</li> </ul> </li> </ul> </li> </ul>
상증령 §15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사업용 토지 등</li> <li>○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li> </ul> </li> <li>&lt;단서 신설 &gt;</li> <li>○ 대여금</li> <li>&lt;단서 신설 &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등)</li> <li>○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 사택** 제외</li> <li>*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 및 최대주주의 친족등인 임직원은 제외</li> <li>**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 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li> </ul> </li> </ul> </li> <li>○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 학자금* · 주택자금** 제외</li> </ul> </li> </ul>

상증령 §15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다보유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li> <li>**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li> <li>과다보유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전 5년 평균의 200% 초과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 공제대상 자산 범위</li> <li>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단서 신설 &gt;</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 공제대상 자산 범위 조정</li> <li>(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사업용 토지 제외</li> </ul> </li> </ul>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li> <li>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li> <li>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li> </ul>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li> <li>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li> <li>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li> <li>*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li> </ul>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요건 충족 중소기업

1) 가업의 규모 및 업종요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 (상증령 §15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 조특령 §2조①항 1호 및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요건 (상증령 §15②)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 조특령 §9④1호 및 3호 요건(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 가업경영기간 요건

-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2. 2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나. 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

-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 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함

☞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③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④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됩니다.

**다. 상속인 요건 충족**

-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거주자 요건 없음(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수증자가 거주자여야 함)
-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사후관리 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정)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상증령 §15③2)  
 ※ 다만, 상증령 §15③2는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사업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4, 2016.10.25.)

**2.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기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 비율 제외)을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	
개인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법인가업 주식·출자지분 ×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3.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

-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 개정 내용>

사업영위기간	공 제 금 액	
	'18.1.1. ~ '22.12.31	'23.1.1 이후
10년 이상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600억원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2023년 기준)

-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
-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구 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700억원	상속 재산가액	700억원
없음	가업상속공제액	(600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69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50%(누진공제 4.6억원)
342억 9,000만원	산출세액	42억 9,000만원
(10억 2,870만원)	신고세액 공제	(1억 2,870만원)
332억 6,130만원	자진납부 세액	41억 6,130만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91억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금액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다. 가업상속 공제의 배제(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의2 ②)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① ②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 외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4.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 가업용 자산 명세
-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기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가업상속 후 5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 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이자상당액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 3.1%\* / 365  
 \*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2023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2023.1.1.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단축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5년 후 판단)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다.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다도 추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다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⑧)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 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월과세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sup>\*</sup>
    -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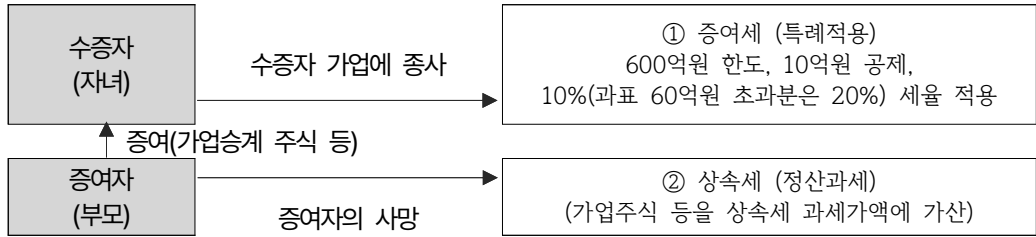
###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정세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정세액을 조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기간별 추정율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 II.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25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증 전	개 정
조특령 §27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자) 최대주주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li> <li>* 상장기업은 20%이상</li> </ul> </li> </ul> <p>&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자 대표이사 재직요건 추가</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영위기간의 50% 이상</li> <li>•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li> </ul> </li> </ul> </li> </ul>
상증령 §15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사업용 토지 등</li> <li>○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li> </ul> </li> </ul> <p>&lt;단서 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여금</li> </ul> <p>&lt;단서 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다보유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범위</li> <li>○ (좌 동)</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 사택** 제외</li> <li>*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 및 최대주주의 친족등인 임직원은 제외</li> <li>**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li> </ul> </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제외</li> <li>*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li> <li>**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li> </ul> </li> <li>○ 과다보유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5년 평균의 200% 초과분</li> </ul> </li> </ul>

① 주식증여가액이 70억원인 경우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10억원)
6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10%(120억원 초과분은 20%)
30억 1,500만원	산 출 세 액	6억원
(9,045만원)	신고세액 공제	-
29억 2,455만원	자진납부 세액	6억원

\* 기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23억 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② 주식증여가액이 600억원인 경우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60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10억원)
59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590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10%(120억원 초과분은 20%)
295억 1,500만원	산 출 세 액	106억원
(8억 8,545만원)	신고세액 공제	-
286억 2,955만원	자진납부 세액	106억원

$$\text{증여세 산출세액}(106\text{억원}) = [(600\text{억}-130\text{억원}) \times 20\%] + [(130\text{억원}-10\text{억원}) \times 10\%]$$

\* 기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80억 2,9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1.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기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株式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

-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 ② 기업 株式를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나. 증여자 요건

- ① 기업株式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 ② 기업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③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株式를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株式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株式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가. 일반증여와 차이점

①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 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6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 (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text{가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업무무관자산가액}}{\text{총 자산가액}}\right)$$

②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 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 지게 됩니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 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일반증여와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일반적인 증여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공제	5천만원	10억원
세 율	10~50%	10~20%(600억원 한도)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상속재산 가산	10년 내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

**나.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p57 계산사례참조)**

-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 ②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다. 기타 과세특례적용 방법**

- ①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③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그 중 1인의 자녀에게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주주들 중 1인(A)이 먼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한 경우 다른 주주(B)는 자녀에게 기업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창업자금 및 기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4.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 가. 증여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가업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정 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 상당액		
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frac{2.2^*}{10,000}$

\*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 1)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 ㉠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회 승인을 거쳐 중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 증여세가 추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5. 기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기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업상속공제」와 「기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원 한도내에서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사후 기업상속	사전 기업승계	
가 업 상 속 승 계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한도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기본공제	-	10억원	
	세율	상속세율(10 ~ 50%)	과세표준 120억 이하 : 10% 120억 초과 : 20%	
	피상속인 요건 (증여자)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사 후 관 리	기간	5년	5년
		업종	중분류 내 변경허용	중분류 내 변경허용
		고용	근로자수(총급여)5년 평균 90% 유지	없음
		자산	40%이상 처분금지	없음
		지분	상속받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납부유예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연부연납	20년(10년거치10년납부) 적용	15년 적용		

Ⅲ.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나,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1. 연부연납제도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 2. 연부연납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부연납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가.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나.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다.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 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4.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① 금전
- ② 국채 또는 지방채
-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 기한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신 청 기 한	허가통지 기한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	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	기한후 신고시 (결정통지 전)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증여세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 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 5. 연부연납의 취소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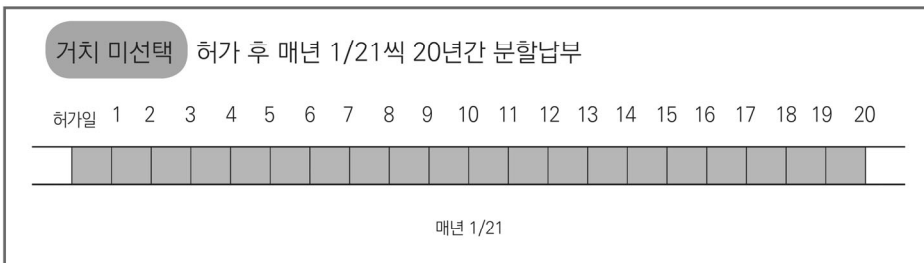
\*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미납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은 일시에 징수함(상징령 §68⑧)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10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

## 6.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연부연납기간은 최장 20년이며 10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거치기간 선택 시) 연부연납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고 거치기한 경과 후 납부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 - \text{가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가업상속공제액}} ]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연부연납기간>

세목			연부연납기간	
			'08.1.1. ~ '22.12.31 상속·증여분	'23.1.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업 상속 재산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 20년간 분할납부 (10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 비율 관계없이 적용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2.1.1. 이후 상속분부터	
증여세			· 1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전, 5년 적용)	

7.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납부일 현재의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합니다(계산사례 ③ 참조).

\* 종전에는 가산율이 중도에 변경되었더라도 분납 전체기간의 일수에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였으나, '23.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안분하여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text{연부연납 총세액} \times \frac{\text{납부기한(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365} \times \text{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left[ \text{연부연납 총세액} - \text{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right] \times \frac{\text{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365} \times \text{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

③ '23.3.20.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24.3.31.납기 연부연납 가산금(1.2% → 2.9%)

$$\left[ \text{연부연납 잔여세액} \times \frac{\text{'22.4.1. ~ '23.3.19.까지 일수}}{365} \times 1.2\% \right] + \left[ \text{연부연납 잔여세액} \times \frac{\text{'23.3.20. ~ '23.3.31.까지 일수}}{365} \times 2.9\% \right] + \left[ \text{연부연납 잔여세액} \times \frac{\text{'24.3.22. ~ '24.3.31.까지 일수}}{365} \times 3.5\% \right]$$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23.3.19.	'23.3.20~ '24.3.21	'24.3.22~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연 2.9%	연 3.5%

**IV.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1. 납부유예제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

① 상속세 납부유예세액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text{총 상속재산가액}}$
② 증여세 납부유예세액	$\text{증여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자산상당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이상 유지하여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2. 납부유예신청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① 상속인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가업상속공제 준용)
- 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①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았을 것(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3.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 가.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기한

-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 2)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

-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나.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의2①)

- 납부유예 신청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시 해당)
-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시 해당)

#### 다. 납세담보의 제공

- 납부유예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 4.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으로서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text{납부유예된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상증시행령 §15⑬)
  -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상증시행령 §15⑭)
- 이 경우 상속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times \frac{\text{당초 상속받은 가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text{365}} \times \frac{3.5\%*}{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2)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text{납부유예된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 ③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 증여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

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시행령 §27의7⑩)

㉠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조특 시행령 §27의7⑫)

○ 이 경우 증여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상당액		
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	당초 상속받은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frac{3.1\%^*}{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기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기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기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기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기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기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납부유예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⑤, 「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⑤)

-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b>이자 상당액</b>			
취소(변경)되는 납부유예세액	×	기업자산(주식)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frac{3.1\%^*}{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 6.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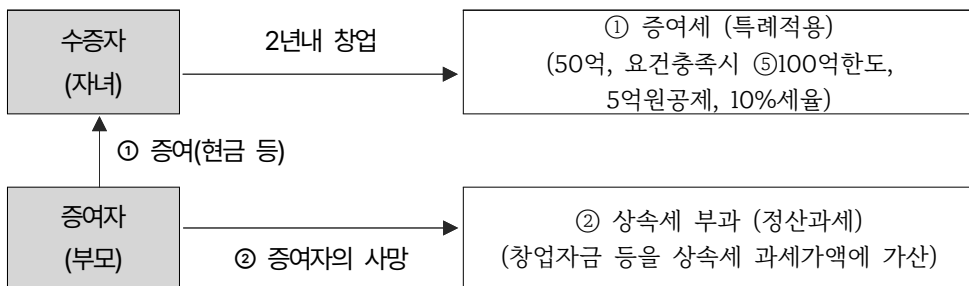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세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⑥)

- ①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기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거나, 기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조특법 §30의7)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에 대하여 기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 제3장 -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6.1.1.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 가능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5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 나.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 다.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라.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마. 창업중소기업

#### 1)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창업의 기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4)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 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sup>\*</sup>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서<sup>\*\*</sup>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text{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text{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 \times \frac{3}{1,000}$$

\*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한도

####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 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계산산식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⑥의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②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라.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이자 상당액		
결정한 증여세액	× 증여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frac{2.2^*}{10,000}$
*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활력 증진	생존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요건	당사자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 [50(100)억원 한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
	기타사항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과세특례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 × 10%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억원)×10%(20%)

구 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활력 증진	생존시 기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요건	당사자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기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 [50(100)억원 한도]	주식 등의 가액 중 기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
	기타사항	2년 이내 창업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과세특례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 × 10%	기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억원)×10%(20%)
사후 관리	가산세 부과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분·불분명한금액×0.3%	-
	증여세 추징 (이자 상당액 가산)	- 2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적용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 - 4년이내 모두 해당목적에 미사용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5년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 5년이내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 * '24.2.29. 이후 ① 대분류 내 변경, ② 대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종변경 가능 - 5년이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 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특례적용 받지 않는 일반세율적용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 II.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총4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 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 2.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 가.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 나. 최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 다.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할증률)

라. 할증평가 제외

-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16.1.1.이후 평가분부터)
- 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3. 중소기업 및 일정수준 중견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 금융감독원 -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내용 → 5.20일 시행예정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기업 평가·선정 기준 마련
- 기업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과정에서 겪는 지정감사 기간 장기화 및 감사인 잦은 교체 등 부담 완화
-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을 통해 대형 및 중견 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
-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내용 → '26.1.1일 시행예정

-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시험 시행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으로 업무위탁

## [ 1.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1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5.14.(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5월 20일(개정시행령 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❶'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법적근거 및 유예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❷'24년중 운영한 「회계품질 종합개선 T/F」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며, ❸밸류업

(기업가치 제고)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회계감리·제재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7개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된다. (세부기준 붙임1 참조)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개요

-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17년 외감법 전면개정시 도입)

※ 주기적 지정유예 효과

-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9년 자율 + 3년 지정

증선위 자문기구로서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했다. 평가위원회는 금융당국, 회계업계, 기업계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공정하게 구성하며, 평가 공정성을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 사외이사 역임, 법률·회계자문 제공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고, 평가위원은 심의가 시작되면 신청회사 임직원과 개별적 접촉이 금지됨

금융위원회는 '25.6.2일부터 약 3주간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평가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외부감사 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① (신청자격)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일('18.1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
- ② (결격사유) 최근 3년내 횡령·배임 관련 공시 또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한정) 위반이 있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되며, 현재 회계감리가 진행중 기업도 신청이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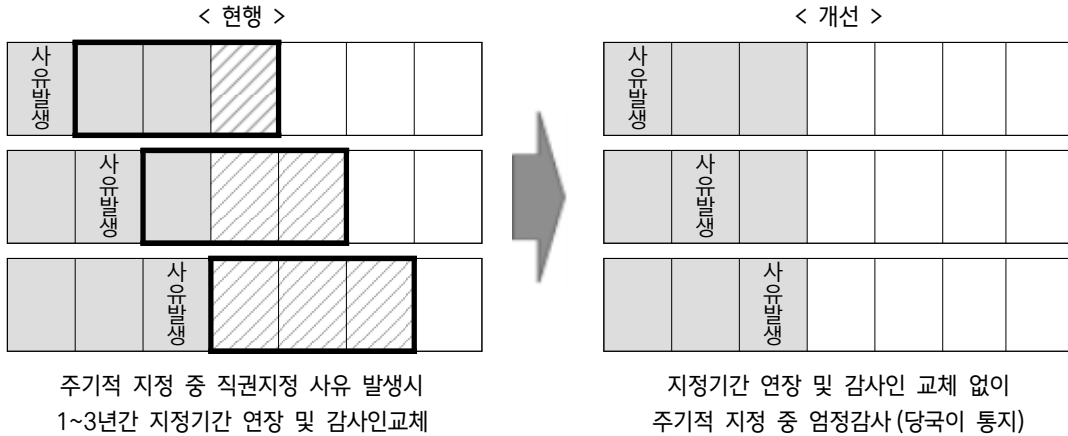
금융감독원과 ESG기준원의 신청서류 확인을 거쳐, 8~9월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9~10월중에 증선위에서 유예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지난 4.28일 1차 기업 설명회에 이어, 확정된 법령에 따라 5.20일 2차 기업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기업들의 평가준비 및 신청에 애로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②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기간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당국이 지정한 독립적 외부감사인이 감사중임에도 일률적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감사인이 교체되어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과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교체 없이 현재 지정 감사인이 엄정 감사하도록 개선된다(당국이 해당사실을 감사인에게 통지하여 엄정한 감사 요청). 다만,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등 회계부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 \* 재무기준 미달(3년연속 영업손실 발생,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대표이사 변경(3년간 3회 이상), 회사의 지정 기초자료 미제출 등 절차 위반 등



- \* (색깔) 지정 대상 (굵은 선) 추가 지정 대상 (빗금) 지정기간 연장 가능한 사업연도

③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개선

- \* 감사인 지정방식은 붙임2 참조

금융당국이 회사의 지정감사인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배정된 회사의 자산규모별로 감사인의 지정점수를 달리 차감하는데,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차감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들간에 감사위험, 감사투입 필요인력, 감사보수 등 차이가 있는데도 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빅4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 \* 예) 자산 2조원 회사와 자산 50조원 회사의 차이를 미반영

\*\* 빅4 회계법인 지정 비중 : ('21) 36% → ('22) 43% → ('23) 51% → ('24) 54.8%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자산 5조원 및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10조원은 가중치 4배,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한다.(감사인 제재조치인 지정제외점수도 동일하게 적용)

가중치 (지정제외점수)	자산 5천억미만	5천억~2조원	2~5조원	5~10조원	10조원 이상
변경전	1배(20점)	2배(40점)	3배(60점)		
변경후	1배(20점)	2배(40점)	3배(60점)	4배(80점)	5배(100점)

\* 개정기준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 1개를 지정받는 경우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 기업 5개를 지정받은 것으로 보아 감사인 점수를 차감

#### ④ 비상장회사 직권지정시 기업의 지정기간 선택권 보장

현재 규정상 비상장사가 1~2년간 감사인 직권지정을 받게 되면 1~2년후에는 의무적으로 또 다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원할 경우” 최초 지정시점에 최대 3년간 동일한 감사인에게 계속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 기업들은 “지정감사인 초도감사시 기업·산업 이해 부족에 따른 비효율(42.6%)” 지적(상장협 설문조사, '23년)

#### ⑤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근거 마련

금융위는 '25.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창기업 선정시 지배구조 취약 회사\*는 선정 대상에서부터 배제하고 회계정보에 기초한 재무지표 등의 공시수준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갖추었는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만큼,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

\* ESG기준원에서 평가하는 지배구조 등급이 C 이하인 경우(전체의 약 46.5%에 해당)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위반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 현재 공인회계사가 10년 내에 장관급 표창을 받거나, 회계투명성 제고 기여 공적으로 금융감독원 표창 등을 받은 경우 감리결과 조치시에 1단계 감경사유로 적용중

## [ 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

또한, 금융위원회는 ‘25.5.13.(화)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같이 의결되어 ’26.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2.9.7일, 행정안전부)의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험위원회 폐지 이후, 기존 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중 합격자 결정 등 중요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응시자격확인 등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된다.

\* 합격자 결정, 부정행위자 결정, 1차시험 면제자 결정

\*\* 응시자격 확인, 시험서류 접수, 응시수수료 감면·반환,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의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공인회계사법령상 3개의 위원회(①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②징계위원회, ③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이 완료되었다.

###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요 >

-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등 총 11명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24.1.12일 시행)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역량있는 회계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을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시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1**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안)**

- 평가기준은 회계·감사와 관련한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
  - (5대 분야) ①감사기능 독립성, ②감사기구 전문성, ③회계·감사 시스템 실효성, ④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⑤회계투명성 개선 노력
  - (17대 항목) 평가분야별로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조직)의 효과성,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세부항목

〈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분야 및 항목별 배점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감사기능 독립성 (300)	1) 내부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 1인 분리선출 100점, 2인 이상 200점	200
	2) 내부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	50
	3) 외부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50
감사기구 전문성 (200)	4)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50
	5) 회계전문성 확보 여부	50
	6) 감사위원장의 회계전문성	100
①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250)	7) ①회계·감사지원조직* 규모(상대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부서 인력 및 내부감사·감사위원회 지원조직	50
	8) ①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 숙련도(상대평가)	40
	9) 전담지원조직 전문성(회계전문가 규모)	40
	10) ②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위상 * 등기임원 60 (추가) / 비등기임원 40 / 그 외 0	60
	11) ③감사위의 지원조직 평가·임면동의권 * 지원조직 구성원의 평가·인사 불이익조치 발생시 1/2내 감점	60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150)	12) 감사인 선임·공모절차 투명성	100
	13)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50
회계투명성 개선노력 (100)	15)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정성 평가)	100
[가점] 외부 표창(+50)	16)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평가 및 표창	(최대 50)
[감점] 사회적 물의(-50)	17)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야기	(최대 △50)
합 계		1,000 (최대 1,050)

※ '24.12월 방안 발표 이후 주요 변동사항

- ① (회계 지원조직 평가 강화) 기존 '감사지원조직'에서, 재무제표 작성·관리 통제를 담당하는 내부회계 담당인력까지 포함한 '회계·감사 지원조직'으로 평가대상 확대 (평가항목 7) 및 8)
  - \* 다만, 평가항목 9) ~ 11)은 여전히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을 대상으로 평가됨
- ② (지원조직 위상 관련 평가 강화)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이 비등기임원 이상인 경우 40점을 부여하나, 등기임원인 경우 60점을 부여하도록 배점 상향조정
  - \* 다만, 총점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항목 11)의 배점을 80점에서 60점으로 하향조정
- ③ (지원조직 인사상 독립성 평가 강화) 지원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관련 평가·인사상 불이익 조치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점 60점의 1/2 한도 내에서 감점 신설

**붙임2**

**감사인 지정방식**

- 매월 지정사유 발생 회사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자산규모 順으로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차례로 배정하되,
  - \* 인원수, 감사부문 매출,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산정하고, 회사가 배정될 때마다 배정받은 감사인의 지정점수가 차감
- 감사투입여력, 품질수준 등을 고려한 감사인 群을 분류하여 群마다 지정가능 회사를 차등화(예,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가' 群만 가능)

① 지정대상 선정	② 회사군 분류	③ 감사인군 분류	④ 감사인점수 산정	⑤ 회사 ⇔ 감사인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사유 발생</li> <li>▪ 월별지정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규모 구분</li> <li>▪ 큰순서대로 나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구분요소</li> <li>▪ 충족여부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수*경력점수</li> <li>▪ 가산/차감요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인점수 지정수 규모</li> <li>▪ 순위대로 매칭</li> </ul>

① 감사인 군(群) 분류기준 (외감규정 별표4)

▪ 현재 회계사 수, 품질관리담당인력 비중, 손해배상능력 및 품질관리 감리·평가결과 고려

군	법인수	소속 회계사 수	품질관리인원의 기준* 대비 규모	손해배상능력	자산규모별 지정 가능회사			
					0	1천억	5천억	2조
가	4	500인 ↑	140% ↑	1,000억원 ↑	모든회사			
나	14	100인 ↑	140% ↑	100억원 ↑	자산 2조원 미만			
다	21	40인 ↑	120% ↑	10억원 ↑	5천억원 미만			
라	1	그 밖의 회계법인			1천억원 미만			

\* (회계사수 40~70명) 1명 (~100명) 2명 (~300명) 2명 + 100명 초과인원의 2% (301명~) 6명 + 300명 초과인원의 1%

② 감사인 점수 산정방식 (외감규정 별표3)

<b>감사인 점수</b>	=	소속 회계사 인원수 <sup>1)</sup>	×	차감 회계감사 외 매출 비중 <sup>2)</sup>	×	△감점 품질관리 감리 지적사항 <sup>3)</sup>	×	+가점 품질관리수준 우수 평가 <sup>4)</sup>
-------------------	---	--------------------------------	---	-------------------------------------	---	--------------------------------------	---	--------------------------------------

1) (경력별 가중치) 수습 40, ~2년 80, 2년~ 100, 10년~ 110, 20년~ 120, 30년~ 110, 40년~ 100  
 2) (회계감사 매출비중별 차감율) 40~50% 3%, 30~40% 6%, 20~30% 9%, 10~20% 12%, ~10% 15%  
 3) (미이행 권고사항 개수별 차감율) 미구축 또는 미운영 2%, 일부 미구축 또는 일부 미운영 1%  
 4) (계량지표 평가결과 가산율) 상위 15% 이내 & 85점 이상 10%, 상위 30% 이내 & 80점 이상 5%

③ 배정후 감사인 지정점수 (외감규정 별표3)

$$\text{배정 후 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배정 前 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 \times \text{규모별 가중치}^*}$$

\*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은 3배 / 5천억원 ~ 2조원은 2배 / 5천억원 미만은 1배  
 (⇒ 2조원 이상 구간을 2~5조원 3배, 5~10조원 4배, 10조원 이상 5배 구간으로 세분화)  
 \*\* 감리조치 등에 따른 해당 지정제외점수 : 2조원~ 60점, 5천억원~2조원 40점, ~5천억원 20점



# 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 -

- (투자)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
- (회수)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 (재투자) 원활한 재투자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28일(수)부터 6월 17일(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1.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모태자펀드('18) 및 벤처투자회사·조합('23)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여,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가 등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22)'을 통해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한다. 이는 인수합병(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하여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3. 원활한 재투자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 제5조(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 ②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p>	<p>● 제5조(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 ②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u>다만, 사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u></p>

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배분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
[별지1]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 제35조(배분원칙)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배(배분)금액 및 시기는 조합원의 동의로 정한다.	[별지1]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 제35조(배분원칙) ① ~ ③ 동일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배분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
● 제7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② (생략)  <신설>	● 제7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5조제6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①·② (생략) 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영 제35조제7항제3호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붙임2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 제3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등) ② (생략) 2. 창업기획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감독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등) ② (생략) 2. 창업기획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투자 등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

● 제6조(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영 제16조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영 제1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제6조(행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6조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영 제1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2.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한 경우
  -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붙임 3**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 제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① (생략)                      ② 규칙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제7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p>	<p>● 제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① (생략)                      ② 규칙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영 제35조제7항제5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p>

<p>● 제10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등) ① ~ ② (생략)</p> <p>③ 영 제8조제2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제10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 제8조제2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u>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창업기획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가. <u>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한 경우</u></p> <p>나. <u>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u></p> <p>다. <u>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u></p> <p>라. <u>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u></p>
--	--



#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2일(금)	5월 7일(수)	5월 8일(목)	5월 9일(금)
미 달 러 (USD)	1426.90	1426.60	1390.10	1396.00
위 안 화 (CNH)	196.60	196.92	193.23	192.84
일 본 엔 (JPY)	980.89	995.92	969.17	956.69
유 로 화 (EUR)	1611.54	1617.27	1575.82	1567.22
영 국 파 운 드 (GBP)	1895.14	1903.73	1852.69	1848.86
캐 나 다 달 러 (CAD)	1030.07	1035.72	1007.55	1002.69
홍 콩 달 러 (HKD)	183.95	184.06	179.67	179.57

통 화 명	5월 12일(월)	5월 13일(화)	5월 14일(수)	5월 15일(목)	5월 16일(금)
미 달 러 (USD)	1405.60	1400.40	1413.70	1415.80	1399.60
위 안 화 (CNH)	193.81	193.99	196.71	196.32	194.03
일 본 엔 (JPY)	964.23	943.38	958.67	966.12	961.96
유 로 화 (EUR)	1578.35	1553.25	1581.72	1583.64	1566.43
영 국 파 운 드 (GBP)	1868.04	1844.82	1880.72	1878.27	1862.66
캐 나 다 달 러 (CAD)	1009.34	1002.11	1014.64	1012.95	1002.94
홍 콩 달 러 (HKD)	180.73	179.74	181.32	181.76	179.31

통 화 명	5월 19일(월)	5월 20일(화)	5월 21일(수)	5월 22일(목)	5월 23일(금)
미 달 러 (USD)	1394.30	1398.00	1392.60	1387.10	1378.40
위 안 화 (CNH)	193.86	193.86	193.13	192.40	191.60
일 본 엔 (JPY)	960.43	964.50	964.50	962.96	958.59
유 로 화 (EUR)	1560.36	1570.51	1571.20	1569.85	1555.94
영 국 파 운 드 (GBP)	1854.42	1867.24	1865.04	1859.96	1850.36
캐 나 다 달 러 (CAD)	999.18	1001.47	1001.19	1000.29	994.66
홍 콩 달 러 (HKD)	178.43	178.76	177.91	177.16	176.10

통 화 명	5월 26일(월)	5월 27일(화)	5월 28일(수)	5월 29일(목)	5월 30일(금)
미 달 러 (USD)	1376.90	1365.00	1368.30	1374.60	1381.40
위 안 화 (CNH)	191.05	190.19	190.43	191.27	191.88
일 본 엔 (JPY)	964.05	956.62	948.79	946.56	959.27
유 로 화 (EUR)	1566.36	1554.74	1551.04	1551.17	1571.14
영 국 파 운 드 (GBP)	1864.25	1851.83	1848.98	1850.21	1864.48
캐 나 다 달 러 (CAD)	1003.06	993.74	990.34	993.35	1000.51
홍 콩 달 러 (HKD)	175.81	174.19	174.57	175.42	176.18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i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